

『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5년 9월 1일

나. 발 의 자 : 안주찬, 강승수, 권기만, 김근아, 손홍섭,
정하영, 허 복, 안장환 (8명)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9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9월 9일

제1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주찬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새마을운동의 종주도시로서 기반강화와 활성화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계승, 발전 및 조직 육성에 기여하고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사업비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새마을연구소 및 박정희새마을연구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2조)
- 새마을운동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함(안 제3조)
- 새마을운동 관련 각종 행사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탁 규정을 신설함(안 제4조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 제2조, 제3조
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조례안은

「지방재정법」(14.11.29. 시행) 및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(15.4.29. 공포, 시행) 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2조에서 새마을연구소 및 박정희새마을연구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
- 안 제3조에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새마을운동 지원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서는 새마을운동 관련 각종 행사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탁 규정을 신설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새마을운동의 종주도시로서 기반강화와 활성화를 위해
새마을연구소 및 박정희새마을연구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,
새마을운동조직 운영, 새마을사업 추진,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
능력 배양 등을 위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
새마을운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
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